

# FTA BRIEF

美 트럼프 관세정책  
추진 근거 및 부과 현황

Vol. 05  
July 2025



한국원산지정보원

# 한국원산지정보원

- ☑ 한국원산지정보원은 본격적인 Mega-FTA 시대를 맞이하여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과 활용 및 검증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 및 국가의 관세행정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는 전문 기관입니다.
- ☑ 한국원산지정보원은 「FTA BRIEF」를 통해 자유무역협정(FTA)과 원산지 관련 수집 정보와 주요 이슈를 분석하여 기업들이 FTA 원산지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기간행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한국원산지정보원 사업

### 활용연구

FTA 활용률 통계 산출  
FTA 관세율 정보 제공  
수출입 기업 FTA 활용 지원

### 정책연구

FTA 협상 지원  
FTA 정책 지원정보  
원산지 규정 분석 및 해석

### 신통상규제 연구

수출입 규제 수집 분석  
원산지판정 사례 분석  
국제통상 정책 동향 수집 분석

## FTA·원산지 연구

관세청 FTA  
이행 지원

수출입기업  
지원

### 원산지검증 지원

국내·외 품목·산업 동향 수집 분석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지원

인증수출자 인증 예비조사

###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운영

중소기업 대상 원산지관리시스템 제공

### FTA 전문인력 양성

FTA 활용 기업을 위한 맞춤형 교육  
전문자격제도 운영 및 도서발간

##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 품목 신규 지정

- ☑ 관세청은 원산지 입증자료 구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편의 도모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였다.(’25.6.30 시행)
- ☑ 이번 개정을 통해 총17개 품목을 원산지 간이 확인 대상으로 신규 지정하였으며, 국내 수출기업들은 이전보다 간소화된 증빙서류를 제출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우리 기업들은 자사 수출 물품이 한국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8가지 서류(원산지소명서 및 원산지소명서 입증 서류 7종)를 국내 제조(포괄)확인서 하나만으로 갈음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수출물품(8종)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1종)
-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7종*)	국내제조(포괄)확인서로 대체

\* 제조공정도, BOM, 원재료수불부, 원료구입명세서, 원가산출내역서, 물품공급계약서, 원산지확인서 등 7종

- ☑ 현재까지 지정된 원산지 간이 확인 물품 326개 품목에서 17개 품목이 신규로 지정돼 343개 품목으로 확대되었으며, 품목별·협정별 적용 여부가 달라 자사가 수출하는 품목이 각 협정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연번	품명	HSK	연번	품명	HSK
1	황산니켈	2833.24-0000	10	마스카라	3304.20-9000
2	립스틱	3304.10-1000	11	선글라스	9004.10-9000
3	헤어 래커	3305.30-0000	12	스플·콤파·보빈과 이와 유사한 물품	3923.40-0000
4	가향한 목욕용 염	3307.30-1000	13	그라인딩휠	6804.21-0000
5	마스크팩	3307.90-4000	14	플라스틱으로 만든 절연용 물품	8547.20-0000
6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글리콜)의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	3404.20-0000	15	텅스텐 카바이드로 만든 공구용 팁(코팅처리되지 않은 것)	8209.00-1090
7	칫솔	9603.21-0000	16	그 밖의 관·호스·파이프(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것)	3917.32-1000
8	치약	3306.10-1000	17	그 밖의 관·호스·파이프(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3917.32-2000
9	아이섀도	3304.20-1000			

\* 해당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2의2] 원산지 간이확인물품에서 확인할 수 있다.

# 美 트럼프 관세정책 추진 근거 및 부과 현황



[ 글\_김민준 한국원산지정보원 신통상규제팀 전문연구원 ]

## 1. 들어가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우선 무역정책’<sup>1)</sup>(America First Trade Policy)슬로건 아래 출범 이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관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국제무역 관세 체계에 더해, 국가별과 품목별 추가 관세(Tariff Stacking)를 부과하는 ‘트럼프 관세’ 조치는 중국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일본·유럽연합(EU) 등 전통적 우방국과 캐나다·멕시코 등 인접국도 포함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적자를 경제 안보의 위협으로 규정하며 대통령 권한을 활용해 국가별과 품목별 관세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가별 관세는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라는 명목의 보편적 기본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 이하 보편관세)와 한국·일본 등 대미 무역 흑자국에 대한 추가 부과 관세를 의미하고, 품목별 관세는 자동차·자동차부품, 철강·알루미늄과 그 파생상품 등 특정 품목에 적용되는 관세를 의미한다.

한국의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는 지난 7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서한 이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15%로 조정<sup>2)</sup>되어, 8월 7일 발효를 앞두고 있다.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완성차의 경우 2024년 전체 수출의 49.1%<sup>3)</sup>가 미국으로 수출되었을 정도로 미국은 중요한 수출시장이다. 1위 수출시장인 미국의 정책변화는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한국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고는 ‘트럼프 관세’의 추진 근거를 통해 정책의 방향성을 살펴보고, 현시점의 CBP 이행지침을 통해 관세부과의 우선순위와 집행의 현황을 정리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전략 수립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1) 2025년 3월 3일 美 무역대표부(USTR)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영문명 Presidential Trade Policy Agenda), 현행 무역정책이 1기 정책(USMCA, 對중 무역제재 등)을 계승 및 확대하면서도 단순한 관세 문제가 아닌 산업·노동·안보가 통합된 국가 전략적 무역 모델로 발전한 형태임을 밝히고 있음.

2) 현재 협상 상황 : 7월 31일 기준 베트남(40%→20%), 인니(32%→19%), 필리핀(20%→19%), EU(30%→15%), 일본(25%→15%), 한국(25%→15%)으로 조정됨, 국가별 세부 현황은 추후 홈페이지 게시 예정

3) 한국무역협회, 2024년 한국의 국가별 완성차 수출금액(단위:달러) : 미국(347.4억), 캐나다(52.7억), 호주(33.4억), 영국(23.9억), 키르기스스탄(15.6억) 등

## 2. 정책 추진 근거로 살펴본 '트럼프 관세'의 장기화 가능성



'트럼프 관세'는 기존 관세 체계에 더해 추가 관세(Tariff Stacking)를 부과하는 조치로서 국가별 관세와 품목별 관세가 구분되어 부과된다.

국가별 관세인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는 상호주의 원칙(Reciprocity Principle)에 따라 설계된 조치로, 2025년 3월 31일 미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2025년 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NTE<sup>4</sup>)」를 근거로 한다. 특정 국가가 미국 수출 물품에 대해 높은 수준의 관세나 불공정한 비관세 장벽을 유지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시행되는 보편적 기본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 이하 보편관세)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기존 관세율과 별도로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이다.

### ● 美 트럼프 관세 요약<sup>5)</sup>

구분	국가별 관세		품목별 관세*		
	상호관세				
	보편적 기본관세	국가별 추가 부과			
정의	모든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무역 불균형 조정 관세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		
대상	전 세계	對미 무역 흑자국 (한국 포함)	특정 품목 <sup>6)</sup> (자동차·부품, 철강·알루미늄)		
근거	국제긴급경제제한법(IEEPA)		무역확장법 제232조(국가안보)		
경과 (한국)	국가별 관세부과 현황		품목별 관세부과 현황		
	일자	관세율	품목	발효	관세율
	기존	10%(+15% 유예)	자동차	04.03. 08.07.	25% 15%(현행25%) <sup>7)</sup>
08.07. 이후	15%	자동차 부품	05.03. 08.07.	25% 15%(현행25%)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03.12. 06.03.	25% + 25%   총 50%
			구리 및 구리 파생상품**	08.01.	50%

◎ 자료 출처 : 연구자 재구성, 인용(2025년 미국 최신 관세부과 현황표, 한국원산지정보원, 2025.07.)

\* 목재, 항공기·엔진·부품, 핵심광물·파생상품, 의약품, 반도체 등 부과 예고

\*\*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과 같이 함량을 기준으로 부과(美 백악관, 2025.07.30.)

품목별 관세는 제232조(Section 232)에 근거하여 자동차·자동차 부품에 25%, 철강·알루미늄과 그 파생상품에 50%의 관세가 적용되며, 반가공 구리제품 및 구리 파생상품 역시 2025년 8월 1일부터 철강·알루미늄과 그 파생상품과 같이 함량에 따른 50%의 관세부과가 적용된다.

4)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발표하는 보고서로 미국이 직면한 對한국 무역·비관세 장벽 문제를 조명하고 관련 대응책을 제시함.(한국 부분은 ① 한-미 FTA 이행, ② 기술장벽(TBT), ③ 위생 및 식물 위생(SPS) 장벽, ④ 정부조달장벽, ⑤ 서비스 분야 규제, ⑥ 디지털 통상 장벽, ⑦ 외국인 산업 투자 제한, ⑧ 자동차 산업, ⑨ 제약·의료기기 산업 분야가 무역장벽으로 기술되어 있음, p248-254, 2025.03.31.)

5) 본 현황표(2025.07.21.기준)는 美 백악관 행정명령, 포고령 등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추가되고 있는 관세율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작성되었으며, 추가 관세는 기존 적용 관세에 추가되는 개념

6) 철강 제품(50%), 알루미늄 제품(50%), 철강 파생상품(50%), 알루미늄 파생상품(50%) 각각 부과 대상을 규정  
- 철강 및 알루미늄 함량에 대해서만 제232조에 따른 관세부과, 비철강 및 비알루미늄 해당부문에 대해서는 제232조에 따른 관세가 아닌 상호관세를 부과

7)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통해 한국산 자동차·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15% 적용에 합의, 단 시행일 미발표로 현재 25% 적용 중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정책 추진의 근거로 선택한 법령들을 살펴보면 정책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다. 직접적으로 강력한 권한 행사가 가능한 무역확장법 제232조와 국제 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 등은 모두 조치 기간과 관세율의 제한이 없는 공통점이 있어 장기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

● **美 트럼프 관세 관련 법적 근거**

연도	법령명	요약	대통령의 권한	주요 적용 사례
1930	관세법 (Tariff Act of 1930, 19 U.S.C. § 1202)	수입 물품 분류 및 관세 체계(HTSUS)	권한 없음	- AD/CVD(반덤핑/상계관세) - CBP 통관 규정
1930	스무트-홀리 관세법 (Smoot-Hawley Tariff Act)	농민 보호를 위한 고율 보호관세 설정	재량권 없음 (의회 권한 중심)	- 대공황기 보호무역 관세 폭등 기반
1962	무역확장법 (Trade Expansion Act of 1962)	국가 안보 사유로 수입 제한 가능 (제232조)	권한 있음 (국가안보 위협 시 수입 제한 명령 가능)	[2025 품목관세]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 희토류 등
1974	통상법 (Trade Act of 1974)	불공정무역 보복 및 긴급조치 (제201조, 제301조 등)	권한 있음 (제201조) 산업 피해 (제301조) 보복 관세	- 태양광 세이프가드(201) - 對중 제재(301)
1977	국제비상경제권법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 Act, IEEPA)	국가비상시 외환·무역·자산 통제	권한 있음 (NEA 전제) 수출입 통제 및 자산 차단	[2025 상호관세] - 8월 1일 이후 25% 적용 - 이란·러시아 제재, - TikTok·Huawei 제재

◎ 자료 출처 : 연구자 작성

무역확장법 제232조는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단기간에 특정 품목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통상법 제301조는 對중 제재 등 불공정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또한 IEEPA는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대통령이 광범위한 경제 조치 권한을 행사하도록 허용한다.

● **美 트럼프 관세 법령 세부 조항**

구분	무역확장법	통상법			관세법	국제비상경제권법 (IEEPA)
	제232조	제201조	제301조	제122조	제338조	
분류	19 U.S.C. § 1862	19 U.S.C. §§ 2251-55	19 U.S.C. §§ 2411-20	19 U.S.C. § 2132	19 U.S.C. § 1338	50 U.S.C. §§ 1701-10
전제 조건	국가안보 위협	국내 산업 피해	무역협정 위반; 기타 관행	국제 지급 문제	미국 산업에 대한 차별	국가비상사태
판정 기관	상무장관	ITC (국제무역위원회)	USTR (무역대표부)	없음	없음	없음
기간 제한	없음	4년 (최대 8년까지)	4년 (연장 제한 없음)	150일	없음	없음
관세율 제한	없음	50% (단계적 축소 요건 명시)	없음	15%	50%	없음
적용 사례	2018~ - 철강·알루미늄 2025~ - 자동차 부품	2018~2026 - 태양전지 제품	2018~ - 특정 중국 물품	사례 없음	사례 없음	2025~ - 중국·캐나다·멕시코 물품 - 트럼프 관세

◎ 자료 출처 : 수입 관세부과가 가능한 의회와 대통령의 권한(美 연방 의회, 2025.04.23.)

한편, ‘트럼프 관세’에 대한 미국 내 반대 여론도 존재한다. 특히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적용과 관련해 일부 주 정부 연합과 민간 기업·산업 단체는 해당 정책이 소비재 수입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경제적 손실을 불러왔다는 이유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주장하며 위헌 소송<sup>8)</sup>을 제기한 상태다.

해당 소송의 쟁점은 관세부와 권한은 의회에 있고 대통령에게 있지 않다는 점으로, 소송 결과에 따라 IEEPA에 따른 상호관세와 같은 조치들은 변동의 여지가 있다.

### 3. 현행 CBP 이행 지침에 따른 관세 부과 순위



추가 관세(Tariff Stacking)는 하나의 수입 품목에 대해 서로 다른 무역 조치를 근거로 둘 이상의 관세가 중첩되어 부과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국산 자동차는 자유 무역협정(FTA) 관세 또는 기본관세에 더해 제232조에 따른 관세가 추가되고, 중국산 자동차는 기존 관세 외에도 제232조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가 모두 추가로 부과된다.

CBP는 대통령 행정명령 제14289호에 따라 무역확장법 제232조 대상 품목에 대한 특정 관세 조치를 집행하고 있으며, 중복 부과 대상 품목의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우선순위는 자동차, 자동차 부품, 철강, 알루미늄 등의 품목을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풀이된다.

#### ● 美 추가 관세(Tariff Stacking)부과 기준

구분*	설명	조건	추가 부과 여부	단서 조항
(a)	자동차·자동차 부품	(a) 부과	(b)~(e) 제외	[타 관세부과 가능] - 기본세율, FTA 특혜세율, 반덤핑, 상계관세, 통상법 제301조 등)
(b)	IEEPA(마약·이민)	(b) or (c) 부과	(d)~(e) 제외	
(c)	남부 국경 반입 물품			
(d)	알루미늄	(d) 부과	(e) 추가 부과	
(e)	철강	(e) 부과	(d) 추가 부과	
USMCA 관련 물품	총족	(a) 제외 (b) or (c) 제외	(d)~(e) 추가 부과	[부과 대상] - 미국 외 원산지 구성분 - 승용차 및 경트럭 부품 제외
	미총족	-	-	-

◎ 자료 출처 : 연구자 재구성, 인용(행정명령 14289에 따른 CBP 이행지침, 2025.05.20.)

\* (a)~(e) : 행정명령 14289 제2조 관세부과 적용 범위의 분류 코드

8) 2025년 5월 28일 US 국제무역법원(CIT)은 IEEPA를 근거로 한 추가(Staking) 관세부과는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불법 판정 및 금지 명령을 내렸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항소로 집행이 유예된 상태로, 위헌 여부를 가리는 소송 결과에 따라 관세정책의 변동 가능성이 있음

**1) 자동차 관세(a)는 다른 모든 관세보다 우선 적용된다.**

● 자동차·자동차 부품 관세부과 기준

전제	추가(Stacking) 부과 여부
제232조 자동차·자동차 부품 관세부과 O	- 제232조 철강·알루미늄 관세 제외 - 국경(캐나다 or 멕시코) IEEPA 관세 제외

◎ 자료 출처 : 연구자 재구성, 인용(행정명령 14289에 따른 CBP 이행지침, 2025.05.20.)

제232조에 근거한 자동차·자동차 부품 관세가 부과 시, 동 법(제232조)에 근거한 철강·알루미늄 관세와 IEEPA(캐나다 또는 멕시코) 관세는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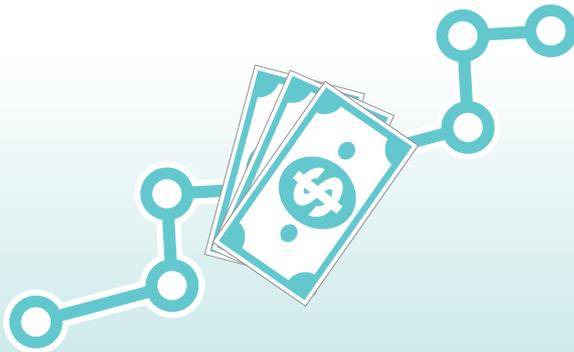
**2) 철강·알루미늄 관세(d), (e)는 국경 관련 IEEPA 관세보다 우선 적용된다.**

●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 기준

전제	추가(Stacking) 부과 여부
제232조 자동차·자동차 부품 관세부과 X + 제232조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 O	- 국경(캐나다 or 멕시코) IEEPA 관세 제외 - 제232조 철강 + 제232조 알루미늄 동시 적용

◎ 자료 출처 : 연구자 재구성, 인용(행정명령 14289에 따른 CBP 이행지침, 2025.05.20.)

제232조에 근거한 관세 중 철강·알루미늄 관세만 부과 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는 모두 부과하며, IEEPA(캐나다 또는 멕시코) 관세는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다.



#### 4. 자동차·자동차 부품의 관세부과 현황



자동차·자동차 부품이 한국산으로 판정될 경우,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관세 또는 기본관세에 더해 무역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에 따른 관세(15% 예정, 현행 25%)가 부과된다. 또한 중국산으로 판정될 경우, 기존 관세에 더해 제232조(Section 232)에 따른 25%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20%가 모두 추가로 부과되며, 특히 중국산 전기차의 경우 통상법 제301조에 따른 관세 100%가 별도로 부과되어 총 145%의 관세가 적용된다.

#####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부과 현황\*

구분	원산지		무역확장법 제232조		IEEPA		기존 관세	총 관세
			자동차& 부품 <sup>9)</sup>	철강& 알루미늄	마약& 이민	상호 관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한국		25%(기존)	-	-	-	기본 or FTA + 제301조 + AD/CVD	25%
			15%(예정)					15%(예정)
	중국		25%	-	20%	-		45% or 145% (전기차)
	캐나다 멕시코	USMCA 충족	① 완성차 조건: 상무부 승인 대상: 비미국산 부품 25% ② 부품 0%	-	-	-		① 완성차 비 미국산 (25%) ② 부품(0%)
		USMCA 미충족	25%	-	-	-		25%

◎ 자료 출처 : 연구자 재구성, 인용(트럼프 2기 관세부과 종합현황 및 타임라인, 한국원산지정보원)

\* 기발표 내용을 기초로 변경된 CBP 지침 반영(2025.7.16.)

7월 16일 CBP는 USMCA 기준을 충족한 자동차·자동차 부품과 관련해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상무부 승인을 받은 완성차의 경우 미국산이 아닌 부품 (Contents)의 가치에 대하여만 25% 관세가 부과되고, 자동차 부품은 관세가 면제된다. 단, CBP가 미국산 부품의 비중이 과대 산정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전체 완성차 가치의 25%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 ● USMCA 충족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과세 기준

구분	설명
대상	USMCA 기준 충족 승용차 및 경트럭
절차	美 상무부 승인(수입자가 미국산 비율 증빙 문서 제출)
계산식	25%(제232조) × 비 미국산 부품(Contents) 가치
시스템	HTS 9903.94.03 및 CBP CSMS* 지침 반영

◎ 자료 출처 : 미 CBP 이행지침(2025.07.16.), 상무부 홈페이지

\* 화물 시스템 메시징 서비스 : 수입 물품에 대한 CBP의 실무적 지침

9) 현재 한국은 서면화된 발표가 없어 25% 부과중

## 5. '트럼프 관세' 효과 (관세수입)



'트럼프 관세'의 효과는 통계로도 확인되고 있다. 지난 7월 13일 기준, 집계된 미국 관세수입은 1,087억 5,000만 달러<sup>10)</sup>로 나타났으며, 이 중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을 근거로 한 관세수입은 677억 7,000만 달러를 차지했다.

### ● 美 관세수입 현황 요약

(단위 : 달러)

구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22.10.01.~'23.09.30.	'23.10.01.~'24.09.30.	'24.10.01.~현재까지
수입 상품 가치	3조 3,500억	3조 3,600억	2조 4,600억
총 관세 징수금액	923억	880억 7,000만	1,087억 5,000만

◎ 자료 출처 : CBP 무역통계, 2025.05.31. 기준 (검색일 : 2025.07.24.)

이에 대해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2025년 연말까지 연간 관세수입이 3,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sup>11)</sup>이라고 전망하며, 트럼프 관세정책의 실질적 효과와 재정적 기여를 강조했다.

### ● 美 관세수입 현황

(단위 : 달러)

구분	물품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22.10.01.~'23.09.30.	'23.10.01.~'24.09.30.	'24.10.01.~
제201조	태양광 제품	2억 3,704만	2억 9,666만	3억 8,307만
제232조	철강	15억 7,000만	12억 2,000만	29억 6,000만
제301조 (對중국)	알루미늄	4억 5,967만	3억 8,921만	17억 3,000만
	중국 물품	383억 6,000만	381억 7,000만	289억 7,000만
IEEPA (對중국 및 홍콩)	모든 물품	-	-	183억 8,000만
IEEPA (對멕시코)	모든 물품	-	-	47억 6,000만
IEEPA (對캐나다)	모든 물품	-	-	15억 4,000만
IEEPA (상호관세-기본 10%)	모든 물품	-	-	221억 5,000만
제232조 (자동차)	자동차	-	-	124억 2,000만
IEEPA (상호관세-對중국)	중국 물품	-	-	48억
제232조 (자동차 부품)	자동차 부품	-	-	37억 2,000만

◎ 자료 출처 : CBP 무역통계, 2025.07.13. 기준 (검색일 : 2025.07.24.)

10) CBP 무역통계, [www.cbp.gov/newsroom/stats/trade?utm\\_source](http://www.cbp.gov/newsroom/stats/trade?utm_source), 2025.07.24.

11) 美 재무장관 관세수입 관련 인터뷰, [reuters.com](http://reuters.com), 2025.07.09.

## 6. 마무리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기존 관세 체계에 더해, 국가별·품목별 추가 관세 (Tariff Stacking)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무역확장법 제232조, 통상법 제301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등 조치 기간과 관세율 제한이 없는 강력한 근거들을 활용하여 장기적 정책 추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의 경우 한국산일 때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관세 또는 기본관세에 더해 제232조(Section 232)에 따른 15%(현행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중국산은 제232조와 IEEPA 관세 및 301조 관세가 모두 중첩돼 최대 145%의 고율 관세가 적용된다.

또한 USMCA 기준 충족 시 관세 면제나 부분적 적용이 가능하지만, 부품 비중 산정과 관련한 분쟁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특히 IEEPA 기반 관세정책은 미국 내에서도 헌법상 권한 논란으로 위헌 소송이 진행되는 등 정책 변동성이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관세' 정책에 따른 미국의 관세수입은 1,087억 5,000만 달러<sup>12)</sup>에 이르고, 이 중 IEEPA에 기반한 관세수입만 677억 7,000만 달러로 집계되는 등 관세의 재정 기여도가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은 완성차를 비롯한 철강·알루미늄 제품<sup>13)</sup> 등의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은 만큼 지속적인 수출을 위해서는 현지 통관 시 예상되는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한 대비를 비롯하여 원산지 증빙 체계를 정비하고 종합적인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

최근 CBP가 우회 수출을 통한 관세 회피 차단을 위해 관련 서류검증을 강화하는 추세이고, 미국의 관세율과 이에 따른 행정지침의 변동이 잦은 만큼 현지 동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원산지정보원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의 관세부과 현황, CBP e-Ruling 사전심사 가이드, 미국 원산지판정 사례 분석 정보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변화 동향과 원산지 판정 기준 및 사례정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들은 미국의 관세변화 동향과 원산지 판정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원산지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CBP 사전심사제도(Advance Ruling) 등을 적극 활용해 대미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 TIP

한국원산지정보원은 8월 7일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일본(25%→15%), 필리핀(20%→19%), EU(30%→15%), 한국(25%→15%) 등 주요 국가와의 협상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국가별 세부 현황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할 예정입니다.

12) 7월 4일 통과된 감세 법안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로 인해, 향후 10년 미국의 재정적자가 약 3.4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연간 3,000억 이상으로 예상되는 현행 '트럼프 관세' 수입이 10년 지속 시 최소 3조 달러의 재원 마련이 가능하게 됨

13) 한국무역협회, 2024년 한국 철강 제품 수출 상대국 : 미국, 일본, 중국, 인도 및 멕시코 순  
2024년 한국 알루미늄 제품 수출 상대국 : 중국, 미국, 베트남, 멕시코 및 일본 순

2025년 미국의 최신 관세부과 현황표

2025년 미국의 최신 관세부과 현황표\*

구분	원산지	트럼프 2기 추가 관세					기존 적용 관세 <sup>2)</sup>						
		제232조 품목별 관세		IEEPA 국가별 관세		관세부과율	부과 구조	통상법 <sup>3)</sup> 제301조	기본관세 <sup>4)</sup> FTA 등	반덤핑 및 상계관세			
		자동차·자동차부품 <sup>1)</sup>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	마약·이민	상호관세								
자동차·자동차 부품	한국	25%				25%	품목별 관세	+	25~100% (전기차)	+	기본세율 또는 FTA세율	or	반덤핑 및 상계관세
	EU·일본	15%				15%							
	중국	25%		20%		45%							
	베트남	25%				25%							
	캐나다·멕시코	USMCA 충족 ① 완성차 조건: 상무부 승인 대상: 비미국산 부품만 25% ② 부품 0%				① 완성차 비 미국산 부품만 25% ② 자동차 부품 0%							
철강·알루미늄	한국·EU·일본·베트남		50%(철) 50%(알)			50%	품목별 관세 (함량 가치)	+	25%	+	기본세율 또는 FTA세율	or	반덤핑 및 상계관세
	중국			20%		함량(50%)+펜타닐(20%)							
	캐나다·멕시코	USMCA 충족 미충족				50%							
철강·알루미늄·반가공 구리 파생상품	한국·EU·일본		50%(철) 50%(알) 50%(구)		15%	~50% (중국 펜타닐 20% 추가)	품목별 관세 (함량 가치) + 국가별 관세 (비함량 가치)	+	25%	+	기본세율 또는 FTA세율	or	반덤핑 및 상계관세
	중국			20%	10% (+24% 유예중)								
	베트남				20%								
	캐나다·멕시코	USMCA 충족 미충족		캐나다 35% 멕시코 25%									
그 외 제품	한국·EU·일본				15%	15%	국가별 관세	+	25% or 50%	+	기본세율 또는 FTA세율	or	반덤핑 및 상계관세
	중국			20%	10% (+24% 유예중)	30%							
	베트남				20%	20%							
	캐나다·멕시코	USMCA 충족 미충족		캐나다 35% 멕시코 25%		캐나다 35% (에너지 10%, 칼륨 10%) 멕시코 25% (칼륨 10%)							

\* 기발표 내용을 기초로 변경된 상호관세율 반영(작성일자: 2025.09.16.)  
 1) 한국·EU·일본은 15%로 합의(EU·일본 서면 합의문 발표) 현재 한국은 서면화된 발표가 없어 25% 부과중  
 2) 반덤핑·상계관세와 기본관세/FTA는 중복 부과가 되지 않음·단, 301조와 기본관세/FTA 및 301조와 AD/CVD는 중복 부과 가능  
 3) 미국은 「통상법」 제301조에 근거하여 중국산 물품에 대해 25%에서 10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적용 대상: 배터리와 부품(25%),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25%), 광물 자원(25%), 영구자석(25%), 반도체(50%), 태양전지(50%), 전기차(100%) 등







# FTA BRIEF



한국원산지정보원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



물자유이용허락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ISSN 3022-7984